

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

☞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.

- ▶ 대한민국의 정당은 「정당법」 제3조에 따라 수도권 서울에 중앙당을,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각각 시·도당을 둘 수 있고,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.
- ▶ 따라서,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,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.
- ▶ 다만,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·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당법」 상 무방함.

※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.
(정당법 제22조)

➔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[재외선거 홈페이지\(http://ok.nec.go.kr\)](http://ok.nec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!

인터넷 검색창 **재외선거**

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**대한민국**의 얼굴입니다